

第102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飲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5面
3.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	25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飲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746
----------	-----

제출년월일 : 2000. 6.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사유

'99. 8. 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조례 준칙('99.11.24)에 근거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안 제6조)
- 나. 감량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 (안 제6조)
- 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 설치규정 삭제 (안 제10조)
- 라.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 (안 제12조)

3.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99. 8. 9)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조례 준칙 ('99.11.24)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 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하여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구체적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당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시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시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장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직접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접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 이물질(종이, 플라스틱 등)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 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여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상
폐 기 물 관 리 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별지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상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			
사업장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 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현황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 산 물 처 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 리 량	부 산 물 량	처 리 방 법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 용 계획	재 활 용 량		재 활 용 방 법		재 활 용 장 소	
	kg/월					
위 탁 재활용 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 탁 업 소 주소·전화
	kg/월					
종로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 표 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자기재활용						
위탁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						

(별지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위탁재활용			
		자가감량방법	자가처리량	처리량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 단 급 식 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음 식 점 : 객석·객실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 콘도 : 객실수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	------

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력 (kg/일)	년 처 리 량	부 산 물 처 리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량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 종	주소·전화

위와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개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u>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u></p> <p>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u>시행규칙 별표 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u></p> <p>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u>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u></p> <p>4. ~ 5. (생략)</p> <p>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u>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 ----- 1. ----- -----<u>농·수·축산물류</u> -----<u>쓰레기와</u> ----- ----- 2. ----- -----<u>시행규칙</u> <u>별표4 제3호의 라목</u> ----- 3. ----- -----<u>가열하여 건조한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u> <u>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u> <u>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u> <u>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감량하는</u> <u>것을 말한다.</u> 4. ~ 5. (현행과 같음) 6. ----- -----<u>사료·</u> <u>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u> <u>다.</u></p>
<p>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u>서울특별시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1에서 정한다.</u></p>	<p>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①----- ----- -----<u>배출요령은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u> <u>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p> <p>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u>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2. -----<u>전용수거용기에 배출</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방법) ----- ----- ----- 1. -----<u>자원화 또는</u> <u>적정처리할</u> ----- -----<u>일시에</u> ----- 2. -----<u>전용수거용기로 배출</u> ----- -----</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6조(음식물쓰레기 <u>감량의무사업장의</u>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u>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법 제4조 또는 제5조의</u>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u>법 제26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2. < 신 설 ></p> <p>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p> <p>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저장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음식물쓰레기 <u>감량의무사업장의</u>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6조(음식물쓰레기 <u>감량의무사업장의</u> 처리방법등)----- ----- <u>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u> 규정에 의하여-----</p> <p>1.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4. 제3호의 ----- -----</p> <p>제7조(음식물쓰레기 <u>감량의무사업장의</u>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 -----</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개
<p>1. <u>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변경)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2.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u>법제63조제2항제2호의</u>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p> <p>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p> <p>① 구청장은 <u>법 제16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u>설치하도록</u>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u>감량의무이행</u> 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u>교부하여야 한다.</u></p> <p>2. -----1월 말까지 당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7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u>----- -----<u>법제63조제3항제2호</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p> <p>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p> <p>① ----- <u>법 제12조의</u> ----- ----- ----- ----- -----<u>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u></p> <p>② ----- <u>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③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p>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규격봉투-----</p>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수수료는 규격봉투-----</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p>	<p>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p>
<p>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①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신설></p>	<p>② -----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 -----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장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사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p>	<p>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u>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u>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14조 (신 설)</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등) ① (생략) ②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p>	<p>④. (삭 제)</p> <p>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자원화하는 시설을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영·규칙 및 조례에-----.</p>

2.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747
----------	-----

제출년월일 : 2000. 6.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사유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및 2000년 하반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가격 등을 세분화하여 구민 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 추가 (별표1 - 제10조 3항 관련)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별 규격의 가격 세분화 (별표2 - 제18조 관련)

- 5, 10, 20, 30 ℓ → 2, 3, 5, 10, 20, 30 ℓ

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 (별표3 - 제20조 관련)

- 2, 3 ℓ (규격 및 용도) 신설

3. 개정근거

○ 2005. 1. 1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3호 가목)

○ 2000년 하반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운영조합 '97. 2. 3)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 (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 지]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1.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을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부피 축소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담배꽂초 등 이물질들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위와 같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플라스틱류	-PET병 -우유병·요쿠르트병 등 병모양의 용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페스티로폴 · 농·수산물포장용상자 · 포장용 완충재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과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등은 깨끗이 씻어서 투명한 비닐지에 넣어서 배출
	-기타 받침용용기 · 접시류,가정용 생활용품류 등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재활용가능표시제품에 한함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기타류	-의류 등	-의류, 신발, 가방류 등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또는 투명한 봉지에 넣어서 배출
	-장판류	-적당한 크기로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재활용 가능품에 한함

(별표 2)

관급 규격봉투의 가격(제18조 관련)

(일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 분	생활폐기물	음 식 물 쓰레기전용	사 업 장 생활폐기물용	사 업 장 음식물쓰레기전용	사업장 생활 압축폐기물용
2 ℓ		40(4)			
3 ℓ		60(6)			
5 ℓ	100(11)	100(11)		120(25)	
10 ℓ	200(21)	200(21)		230(51)	
20 ℓ	380(42)	380(42)	460(101)	460(101)	
30 ℓ	570(63)		670(152)	670(152)	
50 ℓ	910(105)		1,090(253)		1,745(515)
75 ℓ	1,380(158)		1,640(379)		2,600(773)
100 ℓ	1,830(210)		2,180(505)		3,480(1,030)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원)

구 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50 ℓ	1,130(253)	1,320(253)

※ ()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임

일 반 : 1 ℓ 당 2.1원

사업장·특수 : 1 ℓ 당 5.05원,

사업장 압 축 : 1 ℓ 당 10.3원

(별표 3)

봉투용량별규격 및 용도

용 량	규 격 (가로×세로cm)	두께 (mm)	용 도
2ℓ	19 × 35.5	0.020	음식물쓰레기전용
3ℓ	22 × 39.5	0.020	음식물쓰레기전용
5ℓ	26 × 46.5	0.025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ℓ	33 × 56.5	0.025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ℓ	42 × 69.5	0.030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0ℓ	48 × 78.5	0.030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0ℓ	56 × 91.5	0.04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75ℓ	65 × 103.5	0.04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100ℓ	71 × 113.5	0.0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특수규격 봉 투	56 × 91.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별표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정 (안)	
종류	품목	배출요령	배출요령	종류	품목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 소평백, 달력, 포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을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지
2. 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플라스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플라스틱 등)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첼렌,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기타캔 (부탄가스, 실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2. 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첼렌,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기타캔 (부탄가스, 실충제 용기)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 알루미늄,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4.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식탁보, 드레싱기, 기타 용기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축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 제외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병 -우유병 · 요쿠르트병 등 병 모양의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p>-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p> <p>- 과일·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p> <p>-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 무가 부여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제를 제조자(대리점 포함)등에게 직접배출</p> <p>※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제품(pe,pp)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p>		<p>-페스티로폼 · 수산물포 · 포장상자·포 · 장용 완충재</p>	<p>-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비람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p> <p>-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과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p> <p>-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p> <p>-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등은 깨끗이 씻어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배출</p>
				<p>-기타 반침용 · 용기 · 접시류,가정 · 용 생활용품류 · 등</p>	<p>-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p> <p>-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p> <p>※ 재활용가능표시제품에 한함</p> <p>※ 폐유 용기류는 제외</p>
<p>6.음식물류</p>	<p>-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쓰레기</p>	<p>-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묻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p> <p>-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p> <p>- 비닐, 병뚜껑, 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p>	<p>6.기타류</p>	<p>-의류 등</p>	<p>- 의류, 신발, 가방류 등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또는 투명한 봉지에 넣어서 배출</p> <p>- 적당한 크기로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p> <p>※ 재활용 가능품에 한함</p>

[별표2]

관급 규격봉투의 가격(제18조 관련)

(단위: 원)

현				행				정				(안)				
구분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전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업축기물용	구분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전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음식물쓰레기전용	사업장 생활업축기물용	구분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전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음식물쓰레기전용	사업장 생활업축기물용
2ℓ					2ℓ		40(4)									
3ℓ					3ℓ		60(6)									
5ℓ	100(11)	100(11)			5ℓ	100(11)	100(11)		120(25)							
10ℓ	200(21)	200(21)			10ℓ	200(21)	200(21)		230(51)							
20ℓ	380(42)	380(42)	460(101)		20ℓ	380(42)	380(42)	460(101)	460(101)							
30ℓ	570(63)	570(63)	670(152)		30ℓ	570(63)		670(152)	670(152)							
50ℓ	910(105)		1,090(253)	1,745(515)	50ℓ	910(105)		1,090(253)		1,745(515)						
75ℓ	1,380(158)		1,640(379)	2,600(773)	75ℓ	1,380(158)		1,640(379)		2,600(773)						
100ℓ	1,830(210)		2,180(505)	3,480(1,030)	100ℓ	1,830(210)		2,180(505)		3,480(1,030)						

(단위: 원)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현		행		정		(안)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구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구분	사업장생활폐기물용
50ℓ	1,130(253)	1,320(253)	50ℓ	1,130(253)	1,320(253)		

※ () 수도권매입지 처리비임
 일 반 : 1ℓ 당 21원
 사업장 · 특수 : 1ℓ 당 5.05원
 사업장 암 축 : 1ℓ 당 10.3원

봉투용량별규격 및 용도

[별표3]

현			행			계				정
용량	규격 (가로×세로cm)	두께 (mm)	용도	용량	규격 (가로×세로cm)	두께 (mm)	용도	용	도	(안)
				2ℓ	19 × 35.5	0.020	음식물쓰레기전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ℓ	22 × 39.5	0.020	음식물쓰레기전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ℓ	26 × 46.5	0.025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ℓ	26 × 46.5	0.025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ℓ	33 × 56.5	0.025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ℓ	33 × 56.5	0.025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ℓ	42 × 69.5	0.030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ℓ	42 × 69.5	0.030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0ℓ	48 × 78.5	0.030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0ℓ	48 × 78.5	0.030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0ℓ	56 × 91.5	0.04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50ℓ	56 × 91.5	0.04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75ℓ	65 × 103.5	0.04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75ℓ	65 × 103.5	0.04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100ℓ	71 × 113.5	0.0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100ℓ	71 × 113.5	0.0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공공용
특수규격 봉투	56 × 91.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특수규격 봉투	56 × 91.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폐기물용

3.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

의안 번호	741
----------	-----

제출년월일 : 2000.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홍제·불광천유역에 위치한 서울북서지역의 4개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한다.(안 제4조)
-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안 제10조)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 홍제·불광천살리기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단, 경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을 구분하여 해당하천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안 제15조)
-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6조)
-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안 제18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4. 예산수반사항 : 예산조치 필요

5. 행정협의회 규약(안) : 따로붙임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 (목적) 홍제·불광천유역에 위치한 서울서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홍제·불광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매년도 첫번째 정기회시 선출하며,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계인수) 회장이 변경될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며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운영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개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다.

③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협의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관계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4. 홍제·불광천살리기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결) ①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협의회는 상정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전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로 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회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15조 (경비부담)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단, 경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을 구분하여 해당하천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제16조 (결의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정요구)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전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보칙)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0. .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

종로구청장	(인)
은평구청장	(인)
서대문구청장	(인)
마포구청장	(인)